

# 회원관리 규정

##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정관 제3장에 의거 회원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 제 2 장 회 원

**제 2 조 (회원구성)** ①연맹의 회원은 정관 제6조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 3 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입회신청서( 회원등록 카드 양식)를 작성하여 입회비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하거나 연맹의 웹사이트(Web Site) 이용 및 절차에 의하여 가입 신청할 수 있다.

② 웹사이트에 가입시 허가증과 자격증을 첨부하여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내용과 일치한지 여부를 연맹에서 확인 후 승인한다.

③지역본부에서의 가입할 때에는 지역본부에서 허가증과 자격증 내용을 확인한 후 회원등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하고,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사항을 지역본부장의 확인 후 연맹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원 가입시에 허가증의 주소지로 지역본부를 구분하며, 허가증의 주소지가 변경될 때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⑤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에 회원가입 적격자에게는 회원증을 발행해서 본인에게 회원가입을 통지한다.

⑥ 준회원에게는 준회원 번호를 지정한다.

⑦ 연맹은 회원가입 부적격자에게는 그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회원가입신청에 따른 입회금 및 회비를 반납한다.

**제 4조 (등록사항)** 정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및 준회원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 단체인 경우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한다.
2. 생년월일 : 단체인 경우는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한다.
3. 주소 : 허가증의 주소지로 한다 (단체인 경우도 동일).
4. 회원의 종류
5. 회비의 납입 기간
6. 가입 연월일 (등록 연월일)
7.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증과 자격증 사본(단체국은

허가증과 단체국 대표의 자격증사본)

8. 준회원 번호 (준회원의 경우에 한한다.)

9. 등록변경 연월일

**제 5 조 (회원징계)** ① 다음의 경우에는 정관 제11조 2항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1. 관련 법규 또는 연맹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연맹의 사업 및 목적을 저해하였을 경우
3.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주의(구두 경고), 경고(시말서 징구), 자격정지 1년, 2년, 3년, 제명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이사회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시를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 3 장 회 비

**제 6 조 (회 원)** 회원은 정관 제6조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2. 가족회원
3. 단체회원
4. 준 회 원
5. 특별회원

**제 7 조 (회 비)** 회비의 종류와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고 호와 같다.

1. 회비의 종류와 금액 (단위 : 원)

구 분	정회원	가족회원	단체 정회원	준회원
입 회 비	30,000	30,000	50,000	30,000
월 회 비	4,000	2,000	5,000	4,000

2. 입회비는 연맹 가입 시 납부하여야 한다.
3. 월회비는 자동이체 또는 6개월분 이상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 4. 가족 회원은 시설자를 제외하고 추가 회원 3인까지 회비의 50%를 감면하며 4인 이상에 대하여는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납 부)** ① 회비는 연맹 사무총국으로 납부하거나 연맹의 웹사이트(Web Site) 이용 및 절차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중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②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③ 제2항의 회원자격 정지자는 계속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미납된 회비를 완납시는 계속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되 입후보자격 (피선거권)은 2년간 제한 한다.
- ④ 회원 회비 미납자는 연맹에서 제공하는 회원의 제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9 조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면제)** ① 신체장애자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1급의 장애에 해당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하고, 제2급 및 제3급 장애인인 회원은 회비의 50%를 감면한다.

- ② 연맹 이사회에서 의결된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회비 면제 신청서 및 정부에서 인정한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준회원의 정회원 가입 시 입회비를 면제한다.

## 제 4 장 시 상

**제 10 조 (자 격)** 시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사업, 홍보 및 국제 협력 등으로 연맹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2. 아마추어국의 운용이 우수한 자.
3. 사회봉사 및 재난통신지원단의 활동사항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4. 기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11 조 (시 상)** ① 제10조의 해당자는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거쳐 총회 2개월 전까지 연맹으로 수상자 후보 공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상 예정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시상하며, 정회원 수 300명당 1명씩을 시상하며, 1명은 연맹 총회에서, 추가수상자는 지역본부 총회에서 분리 시상한다. 단, 1.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300명 미만인 지역 본부는 1명으로 한다.
- 2. 유관기관의 표창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표창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봉사 및 재난통신

지원단의 활동사항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는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거쳐 사례를 모집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1인(단체)을 선정하여 연맹총회에서 봉사상을 시상할 수 있다.

- ④ 총회 산회 후 수상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시상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이사회 의결 직후부터 시행한다.

단, 평생회비 폐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제 2 조 (개 정)**

- ① 2019. 10. 12. 부칙 개정